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지

|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
| | | | | |

사 채 보 증 약 정 서 (전환사채용)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본인)
주소

위 은행과 본인 사이에 본인이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전환사채(이하 “사채”라 합니다)에 대하여 은행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1조 보증의 부탁과 승낙

①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은행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지급보증총액은 금 원으로 합니다.

- 사 채 원 금 : 금 원의 %인 금 원
- 사채이자총액 : 금 원

②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이 사채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은행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로 인하여 전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사채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보증이 실효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 갑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료율은 연 %로 하고 본인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② 보증료 계산에 있어서 보증료 징수대상 금액은 지급보증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 징수대상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료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되, 차기의 보증료 지급일에 정산하고 최종의 보증료 지급기간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적용한 지연배상금률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제1항 보증료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초과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 ⑤ **본인**은 제10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곧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또는 **은행**의 보충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 4항의 지연배상금률에 해당하는 특별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통지도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해당하는 특별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제 회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
3. 사채의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4. 사채권의 종류 : 만원권의 종
5. 사채권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의 %
6. 사채의 이율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로 합니다.
7. 원금상환의 방법과 상환기일 :
20 년 월 일에 사채원금의 %를 일시에 상환합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8. 이자지급의 방법과 지급기일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다음 이자 지급기일에 매 개월분씩을 선급(후급)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9. 사채원리금지급장소 :
10. 사채의 납입 기일 : 20 년 월 일
11. 사채의 발행일 : 20 년 월 일
12. 사채의 이자기산일 : 20 년 월 일
13. 사채발행의 방법
사채의 원금 원은 공모에 의하여 일시에 발행합니다.
14.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본인**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환조건
1)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발행 당해연도에는 발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의 이자를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사채권면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환가격
본 사채발행을 위한 **본인**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증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기준주가인 원의 %에 해당하는 원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3-06-1036(6-2)(2016.06. 개정)
(보존기간:발행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약관-84호(2016.04.11)

3) 전환가격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text{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 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과 중간사 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다) 전 가)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일전(20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단,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본인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마. 전환의 효력발생

1) 전환의 효력 : 전환은 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 발행년도중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바. 유·무상증자의 제한

본인은 전환권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잉여금 사용제한

동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아. 미발행주식의 보유

본인은 사채권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 수를 보유합니다.

자. 등기

전환청구에 의한 등기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합니다.

차.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에서 교부합니다.

카.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본인**은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중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에 게재합니다.

제5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제4조(제10호 제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적으며 **본인**의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 날인한 후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1. **본인**의 명칭 :

2. **은행**의 명칭 : **(주)하나은행**

3. 사채의 보증총액 : 금 원

1) 사 채 원 금 : 금 원의 %인 금 원

2) 사채이자 총액 : 금 원

4. 보증사채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은 제9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0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 이행 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후 사채권자의 청구 있는대로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보증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 ① 은행이 제11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4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사전구상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① 은행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외에 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15조 통지사항

본인은 약정상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실효

율이 이 약정일로부터 60일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7조 약정서의 비치·공시

은행과 본인은 이 약정서의 사본을 비치하여 본인의 주주·채권자 또는 사채용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9조 약정의 변경

- ① 은행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과 본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0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 ① 본인이 당해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등록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전 ①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 ③ 전 ①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본인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 ④ 본인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게 제출합니다.

제21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 | | | | | |
|-------------|------|------|------|------|------|
|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 부 채 비 율 | % | % | % |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3-06-1036(6-5)(2016.06. 개정)
(보존기간: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약관-84호(2016.04.11)

| | | | | | |
|-------|---|---|---|---|---|
| ()비율 | %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6.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은행**과 **본인**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23조 기타특약사항

| | | |
|--|----|-----|
| | 본인 | (인) |
|--|----|-----|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은행**과 **본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 |
|---------------------------------------|--|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

| | | | |
|-----|-----|-----|-----|
| 상담자 | 직위: | 성명: | (인) |
|-----|-----|-----|-----|